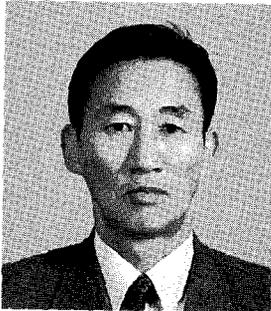


산지이용체계 확립으로 2000년대 목재공급기지 조성



김 영 달
산림청 산림경영국장

1. 머리말

임업은 그 특성상 자연을 상표로 하는 임업 고유의 다양한 기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기간 산업 및 국민대중적 수요에 필요한 중요한 자원을 영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그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즉 임업은 묘목을 심고 육림을 하여 벌채를 하는 1차산업과 목재가공, 목재화학, 펄프제조 등 이용분야의 2차산업, 그리고 국민보건휴양, 수자원보호, 경관조성, 환경정화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상품으로 하는 거대한 3차산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 거대한 복합산업의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작업을 통하여 임분의 형질을 고급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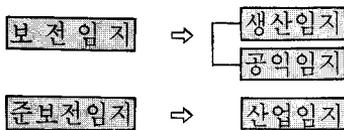
그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는 첫째,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고려하여 산지이용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전국 각지의 이용도증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며, 산지이용에 따른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산림은 이제 겨우 녹화의 단계를 거쳐 30년생 이하의 미숙림이 거의 90%에 이르고 있어 소득과 연결된 경영을 하기에 좀더 기다려야 하겠으나, 장차의 경영에 대비한 수종의 갱신과 임도, 기계화 등 경영기반의 구축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소득의 증대,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늘어나고 있는 산림환경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와 공단주변의 환경림조성을 비롯하여 휴양림조성, 생태계관리등 환경임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전국 산림의 30%에 달하는 국·공유림에 대한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목적경영에 바탕을 둔 선진국형 산림경영체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촌지역을 활력있는 정주공간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산촌마을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부문별 사업추진계획

이러한 임업발전5개년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산림청에서는 1994년도의 증점 추진시책으로 산지이용체계의 확립, 보전임지의 관리, 임야매매증명제 운영 등 산지관리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목재수급계획, 영림계획, 임목생산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도모하며, 임도시설과 보수관리체계의 확립으로 산림경영기반을 조성하고, 아울러 국유림확대집단화와 국유재산관리의 엄정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1) 산지이용체계의 확립



장기적인 산지이용수요에 따라 현재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편성되어 있는 전국의 산림을 생산임지, 공익임지, 산업임지의 3대 이용권역으로 재편하고, 재편된 이용권역별로 새로운 관리방향을 정하는 등 산지이용질서를 확립해 나간다. 즉 생산임지는 목재생산에 적합하고 법령상 제한을 받지 않는 산림을 대상으로 2000년대의 목재공급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보조와 융자, 세제등을 집중지원해 나가며, 방치산림은 임업협동조합등을 통한 위탁또

는 대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계획적인 산림경영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공익임지는 법령상 보전지역,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산림 및 환경보전의 기능에 적합한 산림을 대상으로 환경림조성, 산림휴양공간의 조성, 수자원함양보안림의 지정 등 환경임업을 중점 추진하며, 이를 위하여 국고 및 지방비를 투자하여 정부주관으로 사업을 실행해 나간다. 산업임지는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개발지역 또는 임업이외의 타용도로 사용될 산림을 대상으로 주택, 공장 등 산업용지로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개발비확정 임지는 영림계획에 따라 산주자력의 산림경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산지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추진중인 산림법 개정작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금년중으로 산림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해 나가고, 시도, 시군 등 일선 산림행정기관과 산주의 의견을 들어 임지별 구분기준을 확정하여 이에 따라 산지이용구분작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2) 보전임지 관리

보전임지의 타용도전용은 산림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시군 담당자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현지확인케 하여 허가사항의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필요이상의 과도한 면적이 전용되거나 전용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전임지의 전용협회는 산림법에 의한 협의는 산림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협의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전용가능 여부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해 나간다. 전용 부담금과 대체조림비의 부과, 징수업무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산림전용과 관련된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모해해 나갈 것이다.

(3) 임야매매증명제도 운영

임야매매증명발급업무는 임야매매증명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실수요자를 엄정히 심사하여 임야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는 한편 신속한 발급업무추진으로 민원의 요인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임야매매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불신을 해소하고 법정 구비서류이외의 서류첨부요구는 최대한 지양토록 할 것이다. 또한 매매증명이 발급된 임야에 대하여는 매매증명발급 신청시 제출한 계획의 이행여부를 현지확인하여 의무 불이행자는 산림법에 따라 대집행조치 또는 과태료부과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4) 목재수급 및 임목생산

금년도의 총 원목수급계획량은 9,319 천 m^3 이며 이중 국산재는 1,134천 m^3 , 외재는 8,185천 m^3 이다. 국산재생산은 국내 산림자원증축 및 대경재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임목생산량의 10%내외에서 절벌정책을 계속 유지토록 하는 한편, 외재도입은 도입선의 다변화, 해외임지개발 확대, 육성도입을 위한 조림진출 지원등을 통하여 장기안정적인 목재수입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임목생산은 절벌정책의 원칙하에 영림계획에 의한 벌채를 기본으로 하며, 피해목, 지장목, 수종갱신등 시급한 벌채를 우선으로 하여 펄프재, 갱목, 표고자목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한다. 벌채방법은 개별을

지양하고 산림생태기능의 보호증식과 임분의 형질개량에 주안점을 두며, 간벌사업을 확대추진하여 경제성있는 산림자원의 조성에 힘쓴다.

(5)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

임도는 산림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로서 산촌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금년도의 임도시설은 신설 980km와 보수 1,890km를 계획하고 있으며, 기관별 세부 내역은 표 2와 같다. 임도시설의 기본방침은 아래와 같다.

- 임도시설 기본계획에 의한 간선임도망의 구축
- 임업진흥촉진지역 및 자원화단지에 우선 시설
- 사유임도는 자부담능력이 있는 산주에게 우선 시설토록 조치
- 산림경영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도로 마련
- 가급적 지역별 이용구역단위로 완결시설 추진
- 견고한 임도구축으로 산림훼손의 최소화
- 기존도로와 임도를 연계하여 활용동 제고
- 최저의 시설비로 최대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노선선정
- 기설임도의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관리 강화

(6) 영림계획

영림계획은 과학적인 산림경영의 시작이며 끝이라 할 수 있다. 그간 영림계획의 운영은 예산확보과정, 산림사업량 편성과정

등에 따라 잦은 계획변경등 상당부분 굴절된 상태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작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영림계획 전산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영림 계획전산화는 사유림지역에 있어서는 '91년 중반기부터 착수하여 임업진흥촉진지역

의 영림계획이 전량 컴퓨터에 입력되어 현재 자료대조 및 분석작업을 하고 있으며, 국유림지역은 작년 10월부터 요존국유림에 편성된 영림계획을 영림서 관리소별로 입력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작년 말부터 용역사업으로 영림계획 자동편성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으므로 금년 상반기부터는

표1. '94 기관별 벌채계획량

(單位: 千m³)

區 分	立 木 材 積			原 木 材 積		
	計	國有林	民有林	計	國有林	民有林
計	1,335.0	142.0	1,193.0	1,134.0	120.6	1,013.4
小 計	1,042.2	1.6	1,040.6	885.1	1.3	883.8
서 울	0.3	-	0.3	0.2	-	0.2
부 산	2.3	-	2.3	1.9	-	1.9
대 구	0.2	-	0.2	0.1	-	0.1
인 천	0.3	-	0.3	0.2	-	0.2
광 주	0.5	-	0.5	0.4	-	0.4
대 전	0.7	-	0.7	0.5	-	0.5
경 기	64.9	-	64.9	55.1	-	55.1
강 원	285.3	-	285.3	242.5	-	242.5
충 북	97.0	-	97.0	82.4	-	82.4
충 남	55.3	-	75.3	64.0	-	64.0
전 북	65.4	-	65.4	55.5	-	55.5
전 남	202.3	-	202.3	171.9	-	171.9
경 북	180.0	-	180.0	153.0	-	153.0
경 남	60.3	-	60.3	60.2	-	51.2
제 주	7.4	1.6	5.8	6.2	1.3	4.9
小 計	169.4	129.4	40.0	144.0	110.0	34.0
원 주	44.2	41.7	2.5	37.6	35.4	2.2
강 룡	56.0	48.5	7.5	47.6	41.2	6.4
안 동	34.6	28.6	6.0	29.4	41.2	5.1
공 주	20.9	3.9	17.0	17.8	24.3	14.4
남 원	13.7	6.7	7.0	11.6	3.4	5.9
小 計	2.0	2.0	-	1.7	5.7	-
임 연	2.0	2.0	-	1.7	1.7	-
임 육						
산 림청	121.4	9.0	112.4	103.2	7.6	95.6
보 류						

이 프로그램에 따라 국유림지역부터 산림조사 및 입지 조사결과만 가지고도 영림계획이 자동편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이를 위하여 전산화를 위한 교육을 중앙에서 현지에서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금년도의 사유림지역 영림계획 작성면적은 총 328천ha이며, 이중 정부에서 작성경비를 지원하는 면적은 175천ha이다. 작성경비 지원액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약 10억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표3과 같다.

표2. '94 기관별 임도시설 계획량

단위 : km

기	관	별	계	신	설	보	수
민	유	림	계	700	600	100	
			대전	2	2	-	
			경기	42	30	12	
			강원	67	55	12	
			충북	57	45	12	
			충남	83	70	13	
			전북	79	67	12	
			전남	115	102	13	
			경북	122	109	13	
경남	133	120	13				
국	유	림	계	2,170	380	1,790	
			원주	768	120	648	
			강릉	748	120	628	
			안동	473	85	388	
			공주	49	20	29	
남원	132	35	97				

표3. '94 사유림 영림계획작성 보조사업비

(단위 : 사업량-ha, 사업비-천원)

도	별	사	업			비	고
			량	계	국		
합	계	175,763	1,037,001	518,500	518,501	※ 보조율	
경	기	10,870	64,134	32,067	32,067	- 국 고 : 50%	
강	원	4,563	26,922	13,461	13,461	- 지방비 : 50	
충	북	7,640	45,076	22,538	22,538		
충	남	12,540	73,986	36,993	36,993		
전	북	9,700	57,230	28,615	28,615		
전	남	32,150	189,685	94,842	94,843		
경	북	56,650	334,234	167,117	167,117		
경	남	41,630	245,616	122,808	122,808		
계	주	20	118	59	59		

※ 영림계획작성 ha 당 단비 : 5,900원

(7) 국유림 경영관리 개선

국유림은 장기안정적인 목재공급기반 조성과 공익기능의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산림으로서 산림청에서는 국유림의 확

대집단화와 직영체제의 강화를 주요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국유림 확대구역은 기존의 대단위 국유림 인접지역 위주로 설정하여 민유림대수

또는 교환과 무주, 은닉, 망실자산의 환수를 통하여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유림확대 및 경영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 보존이 적합하지 아니한 분산국유림과 잡종토지를 년차적으로 처분하고, 일부 국유림은 대부 또는 허용사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국유림중 특별한 경영·관리계획이 없는 불요존국유림에 대하여는 분수림을 설정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이다. 한편 국유재산의 보존과 관리업무의 엄정을 기해 나가기 위하여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국·사유림간의 경계분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표주 설치등 철저한 관리를 기해 나갈 것이다.

3. 맺는말

과거 우리 산림공무원과 임업인들은 두

차례에 걸친 치산녹화 10년계획을 통하여 머리를 맞대고 호흡을 함께 하면서 치산녹화라는 대업을 환수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은 잠시도 과거의 성취에 만족해 하고 안주할 틈을 주지는 않는다. 즉 10년, 100년앞을 내다보면서 온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우리 임정이 나아갈 바 지표를 설정하고 다시한번 우리 임업인들의 온 힘을 결집하여 현실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갈 각오를 다져 나가야 할 때인 것이다.

산림청에서는 문민정부의 제2차년도를 맞이하여 새시대에 맞는 임정목표를 설정하고 다시 한번 치산녹화시대의 열과 정성을 다하여 경제임업과 환경임업을 축으로 하는 정책의 개발과 추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으로 있다.

세 계 산 림 자 원

단위 : 100만ha

지 역	총면적(A)	산림면적(B)	기 타	산림면적비율 B/A
아 시 아	2,757	535	2,222	19
아 프 리 카	3,031	684	2,347	23
북아메리카	2,241	716	1,525	32
남아메리카	1,782	891	891	50
유 럽	488	157	331	32
소 련	2,240	946	1,294	42
오세아니아	851	157	694	18
합 계	13,390	4,086	9,034	31

자료 : FAO, 생산통계연감(1990)